

한국 청소년의 연령별 불평등과 과제

최 현*

- I. 서 론
- II. 연령별 불평등과 그 배경
- III. 청소년의 사회적 위치와 불평등
- IV. 연령별 불평등과 청소년 교육
- V. 요약 및 결론

I. 서 론

한국의 청소년은 만 20세가 되면 민법 제4조에 의거 성년이 된다. 성년이 되면 미성년 시절에 받았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결정하여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고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률상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성인이 되므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는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되고 구성원으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되는 위치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다.

성년에 이르지 못한 청소년은 미성년자로서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야 하는데, 특히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은 물론 전문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사회적 제도와 인식으로 인한 불평등의 조건들이 너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이들을 민법이 행위무능력자로 정하여 한 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대열에 함께 두어, 건전육성을 위한 협조는 못할지언정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들에 대한 인격유턴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볼 때 민법상의 연령에 대한 불평등은 그 극치에 이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으로 보는(826조의 2) 입장, 만 17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다는 1061조와 1062조(곽윤직, 1988), 그리고 최근의 3살짜리 어린 아이의 증언을 인정해준 법원판결(한국일보, 1991)들간에는 연령별 불평등의 현실적 측면에서 볼 때 대단한 아이러니가 존재하고 있다 아니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민법

* 한국청소년연구원 연구위원

807조에 의하면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가 되면 혼인을 할 수 있으며 혼인한 남녀는 성년취급을 받게 되므로 행위능력을 취득하게 되는데, 반면에 19세의 청소년은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친권자나 후견인 등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야 한다.

만 18세가 되면 군에 입대하여 국방의무도 수행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이 되어 주민을 위한 봉사도 할 수 있도록 현대에도 개방의 문을 열어 놓고 있으며, 신라시대 삼국통일의 위업이나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에 목숨을 걸고 활약했던 수 많은 청소년들의 공훈은 잊어버린채 현대에 와서까지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차별에 의하여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에 대한 배려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저 힘없고 무능력한 자의 불평등한 자리로 전락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을 분석해보고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입장에서 불평등에 관한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II. 연령별 불평등과 그 배경

셀과 홀(Scsell and Hall, 1979) 그리고 데이비스(Davis, 1985)에 의하면 어느 사회나 시대에 관계없이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관점의 차이는 현저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그 사회의 과제였다고 지적해 주고 있다.

“불평등”의 사전적 정의는 단순히 ‘차별없이 동등하지 아니한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사회·문화적으로 불평등의 개념은 종교, 사회적 신분, 성(性), 학력 등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대우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불평등은 비단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뿐만 아니

라 어느 사회에서나—그 정도의 차이를 둘 뿐—발견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많은 불평등의 요소들 중에서 연령(年齡)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유교적 사상이 사상적 뿌리를 이루고 있는 우리 사회는 물론 어느 문명사회나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속성은 지니고 있는 법이므로 연령에 따른 존경과 우대의 전통을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이 자칫 평등이라는 정의(正義)에 반하는 현상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발달심리학자들은 연령에 따라 한 집단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세대(世代)”라고 하고 이는 약 25-30년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기초하여 나누어진 세대간에는 실제 어느 정도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 왔으며 또한 그것이 이른바 “세대차이”라고 하는 갈등의 형태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는 이런 단순한 세대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크게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기성세대와 신세대의 구별과는 다른—의 그중에서도 성인이 되지 못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세대와 그들 부모 또래의 세대간의 갈등을 불평등의 문제와 연관지어 보는 것이다. 흔히, 학자들과 일반인들은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 “이유없는 반항기” 등으로 개념규정 하고 있는데, 이는 일면 이 시기 청소년들의 주체성 확립과정,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보호받는 아동기도 아니며, 또한 독립된 개체(인격의 완성체)로서 인정받는 성인기도 아닌 그들의 특징을 표현하는데에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반항”이라든지 “질풍노도”와 같은 어휘의 뉘앙스에서 풍기듯 이러한 시기를 통제하고 성인 자신

의 가치관에 맞도록 학습시켜야 하는 시기로 인식하고 있는 면도 또한 사실이다. 반듀라와 월터스(Bandurd and Walters, 1963)는 그의 사회적 학습이론의 하위분야로써 사회에 이러한 그릇된 청소년기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의 만연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청소년들의 옷차림, 말씨를 비롯한 행동거지에서 나타나는 피상적인 현상을 보고 너무 지나치게 저항적인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 둘째, 대중매체가 청소년들이 마치 비동조적이며 반항적인 것으로 잘못 비추고 있다. 셋째, 그동안의 청소년 연구가 주로 비행청소년 내지 범법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많았다(한준상, 1989)는 것이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청소년의 경우 특별히 반항적이거나 정서적으로 안정을 잃고 혼란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부모들과의 내면화를 통하여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더 많이 받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을 흔히 “잘못하면 빗나가는 세대”로 인식하고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그대로 주입하려하고 그들의 자율과 정신적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며 통제와 간섭의 대상으로만 여기려 하는 것이다. 즉, 청소년 그들은 신체적 성장은 충분하여 장래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불평등 집단 또는 불이익 집단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연령별 불평등—특히 민법상 미성년 집단인 중·고등학생이 그들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법률은 그 입법 기술(立法技術)상의 문제로 미성년을 획일적인

연령인 20세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일반 사회인, 특히 기성세대들의 관념은 아무런 뚜렷한 근거 없이 청소년들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 규제의 정도는 “제도권 학생” 그 중에서도 중등교육기관에서 수학(修學)하는 학생들이 집중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 “미성년자보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음주, 흡연,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18세라도 이제 갓 신입생이 된 대학생은 그러한 사회적 제약에서 벗어나는 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는 많은 감시와 이를 어겼을 경우의 학교, 또는 가정으로부터의 제재를 받게 된다. 즉, 우리 사회에서는 연령별 불평등이라는 개념이 30대와 40대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10대와 성인—특히 10대 후반—사이에 크게 존재하며 같은 10대라도 그 사회적 소속 집단의 위치에 따라 차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겠다(Sebald, 1984). 앞서 언급한 보기 이외에도 또 다른 예를 들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미성년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흥행장, 유흥접객업소, 유키장(遊技場) 등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것은 비단 법률상의 규정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의 합의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장소에 청소년이 출입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이는 뒤집어 생각해 보면 “성인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장소라도 가는 것이 무방하다”라는 뜻으로 새길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악”들에 성인이 출입하는 것도 역시 바람직스럽지는 않으나 그들은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일반적으로

청소년보다 뛰어나며 특히 청소년들은 건전한 심신을 가지기 위하여 그러한 유해장소(有害場所)에 출입하여서는 안된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의 이면에는 “너희 청소년들도 얼마든지 어른이 되어서 출입할 수 있는데 왜 그러는가? 그런 말초적 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은 어른들만이 즐겨야지 너희들은 그러면 못써”라는 차별의식 내지 집단적 이기주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성행위(性行爲)에 대한 인식도 또한 그러하다. 앞서 민법의 규정대로 미성년인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다면 일반 성인들은 속으로 의아해 할지는 모르나—일반적 사회현상이 아니므로—그들 부부의 부부생활(특히 성생활)을 부도덕하고 불결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혼인 청소년의 성생활에 대하여는 도덕적, 윤리적 인식외에는 성인의 내재된 이기심 즉, 성생활은 그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이 이를 금기시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객관적 조건을 따지고 보면 그들이 성인 정도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감을 가진다면 성생활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많은 청소년들이 오히려 성인보다 도덕심과 책임감이 더욱 훌륭할 수도 있다.

앞서의 예를 살펴 보건대 특히 성인과 10대 후반의 청소년—제도권 학생들이 더욱 더—들 사이에는 불합리한 불평등적 요소들이 성인의 이기심, 고정관념 등으로 합리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은 분명한 합리적 이유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면 이러한 불평등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첫째,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교적 인습이 뿌리박힌 우리 사회는 특히 어른과 아이의 질서체계가 엄격하였으

며 이는 다원화되어 가는 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이는 어른들이 하는 일을 그들 능력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하여서는 안된다는 고정관념이다. 둘째, 청소년기를 위협스럽게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의 결함이다. 청소년기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성숙해 지는 시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간섭하고 통제하여 선도(善導)해야 할 시기라는 맹목적 인식이 비합리적인 불평등의 문제를 낳게하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또는 그 이외의 사회구성원들의 편의주의적인 발상 때문이다. 10년전 7.30교육개혁 조치는 교복과 두발의 자율화를 가져왔다. 이는 청소년들의 자율신장과 개성존중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나, 요즘은 거의 모든 중·고등학교가 교복을 채택하고 두발을 규제하고 있다. 이는 교복을 입히면 학생다워지고 또한 전체적으로 모양새가 좋으며 탈선 청소년을 쉽게 가려낼 수 있다는 획일적이고 편의주의적인—어른 위주의—생각의 발로인 것이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사형제도가 범죄를 줄이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데에도 이를 고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획일화는 청소년기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데도 통제하기 쉬운 획일화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불평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부모의 그 청소년 자식들에 대한 권위주의적 태도이다. “권위적”인 것과 “권위주의적”인 것은 구별되어야 하며, “권위”란 청소년의 의견과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존중해 주며 부모로서의 의사결정이 정당한 것일 때 획득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은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통제와 어른과의 역할의 무조건적 차별을 “권위”라고 인식하고 있다. 다섯째, 경직된 교육과정과 내용이다. 온 나라를 뚫게 하는 일이지

육은 구조적으로 모순된 교육과 사회제도에도 많은 문제가 있으나 “국정·검인정” 교과서로 대표되는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교육과정과 내용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제공과 인성 발달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많은 제도적, 인식의 모순점들이 청소년을 불평등하게 만들고—대우하고—있는 것이며 이는 또한 청소년 교육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는 요소들이다.

III. 청소년의 사회적 위치와 불평등

1. 청소년의 사회적 위치와 불평등

청소년 문제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온당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으려면, 청소년을 포함하는 전체 사회구조 즉, 개인심리적 활동 공간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관계가 기능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규정하는 현대사회의 구조와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왜냐하면, 청소년 문제는 전체 사회구조 안에서 발생하고 여타의 사회 제부문과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청소년 문제는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부문과 상호작용하는 관계이다.

현대 자본주의사회는 고도 산업사회로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그를 뒷받침하는 상품교환이 경제부분의 기초를 형성하고 규정한다. 또한 공업화, 산업화로 인한 도시화와 기술발전의 심화는 대인관계에서 익명성을 가지게 하며, 효율성 추구는 관료화를 사회 전부문에 확산시켰다. 경제성장, 기술발전, 사회적 유동성, 급격한 사회변동 등은 기존의 가치관, 생

활방식, 사고방식의 변화를 가져 올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인 각자에게는 규범에서 탈피하려는 심리적 아노미 상태에 이르게 한다.

인간관계의 상품화, 대량의 인구 집중현상인 도시화로 인한 익명적 사회관계 및 그로 인한 일탈적 행동에 대한 억제력 상실, 관료화의 진행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인간적 유대감의 상실, 기술발전, 대량생산과 표준화·획일화에 의한 상품화, 몰개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사회는 바로 모순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시대이다. 갈등과 모순이 내재된 현대사회 구조속에서 청소년 문제가 단독적·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청소년의 사회적 위치는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고, 현실은 어떠한가? 다음 절에서는 현대사회라는 전체적 맥락으로부터 청소년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객관적·주관적 실체를 논의한다.

2. 청소년의 사회적 위치—불평등의 발현—

청소년은 개인이 신체적·정서적·사회적·기능적으로 성숙하는 시기에 처한 존재이다. 사회적으로는 자기 자존의 가능성을 스스로 찾는 성인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시기이고, 심리학적으로는 청소년 스스로 새로운 심리적 적응을 추구하는 주변인적 상황기의 존재이며 생물학적으로는 생물학적 확장·성숙이 빠른 시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히 교육학적으로는 사회화의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

이렇듯 미완·미성숙의 존재인 청소년들은 스스로를 규정하면서 성장하지만 동시에 사회적인 상황에 존재구속적이다. 청소년 스스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을 위해 직업적 적응을 위한 준비, 심리적 자아 정체감의 형성 및 발전, 생물학적 확장 및 성숙 등 전인격체

적 자기규정의 시기에 처한 존재이다. 그러나, 그러한 개인적·심리적 성숙·적응의 과정은 사회적 존재라는 인간의 숙명적 존재성으로 말미암아 사회·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적 영향력 하에서 얼마만큼 적응을 완벽히 해내느냐가 개인으로서 성공적일 수 있는지를 규정한다.

청소년의 예민한 감수성과 유동적인 인격은 사회적 영향력에 날카롭게 반응·대립할 수도 있다. 기존의 사회적 관계에 적응을 잘 했거나 사회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청소년들은 성취 지향성, 원만한 인간관계, 직업세계에서의 성공을 위한 준비 등의 가치규범을 성공적으로 소화해 내고 사회의 긍정적 요인에 보다 많은 가치를 두고 행동하며 영향도 받는다. 그러나 사회의 부정적 요인에 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은 자신들을 피해자 혹은 패배자로 규정하고—그러한 과정, 현상은 청소년 개인과 총체적 사회구조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기존의 사회·문화적 가치, 사고방식, 생활방식 등에 반감을 갖고 이탈적 행동도 나타낸다.

경쟁의 사회원리는 개인적인 노력과 성취 그리고 사회적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경쟁 자체에 내재하는 낙오자, 즉, 경쟁에서 탈락된 사람들에게 사회적 보상의 불평등과 차별적 사회관계를 강요한다. 청소년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학교, 가정, 사회에서 기존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지 않게 반응하는 청소년들에게 심한 차별·불평등이 주어진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혹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구조화된 현상을 목도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불평등 구조 속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위치는 일방적인 규제와 복종의 관계였다. 기존 성인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청소년에

게 일방적으로 부과 규제하고, 청소년들은 그에 복종하고 적응하는 굴욕의 관계였다. 즉, 청소년의 미성숙성·미성장은 청소년기의 독특한 실체, 문화, 가치관, 생활방식, 사고방식 등 존재론적 당위성을 기성사회가 인정치 않고 체제구축적 속성, 기득권, 물리적 우월성 등의 요인으로 청소년을 항상 피제약적, 피규정적 위치에 서게 하였고 자생적 청소년 문화를 정립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또한 기성사회의 대응 및 조치의 정당화 논리가 되어 왔다.

다음 장에서는 연령별 불평등을 법적,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 논의하고, 그러한 불평등이 청소년의 개인·심리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점과 청소년 교육과의 상관성을 점검해 본다. 성인사회에 전적으로 규정되어 청소년기의 담지자인 청소년이라는 존재론적 가치가 부정되어, 긍정적으로는 단지 성장 및 직업세계에의 적응을 위한 준비활동 문화만 있고, 부정적으로는 폭력과 비행·이탈의 문제성 문화만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구체적으로 처해 있는 환경은 어떠한가? 진정한—인간이 거쳐가야만 하는 한 시기로서의—청소년 상을 정립하는데 장애가 되는, 청소년에 가해지는 불평등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고 청소년 교육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가?

IV. 연령별 불평등과 청소년 교육

1. 연령별 불평등의 구조

가. 불평등의 수준

불평등은 사회·경제적 수준과 개인·심리적 요인과의 상호 밀접한 연관 속에서 하나의 사회적·구조적 실체로서 자리 잡고 있다. 왜냐

하면 여러 층위의 불평등 현상은 사람의 변화·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람에 관계 없이 무차별적으로 존재·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평등 혹은 차별화가 사회 구조상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 하더라도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것이 실천적 과제이다.

불평등 현상은 사회의 모순구조가 심화될수록 강화되고 또한 그 역도 성립한다. 불평등의 심화가 사회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다면 오직 한가지, 사회적 평등·정의를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시켜 사회적 정체감과 한계를 깨닫게 해준다는 점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불평등 현상의 심화를 막지 못한다면 불평등 현상 때문에 사회정의와 사회적 동질성, 일체감이 파괴되고 사회조직이 해체되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불평등은 좌절과 저항을 유발한다.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 또한 정의로울 수도 없다. 다원론적 사회가 여러 계층과 가치의 다양화를 가져올지라도 그것이 불평등의 원인이 되어서도 안되고 불평등의 정당화 수단으로 되어서도 안된다. 불평등은 다양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 층화에 의해 발생한다.

다음 절에서는 다원성의 원리가 청소년의 연령별 불평등이라는, 즉, 획일적, 동질적 층화에 기인한 불평등으로 전화한 것을 논의한다. 이는 청소년이 연령별, 시계열적으로 성장·성숙하는 단계의 객관성에 기초하여 연령별 의무와 권리, 책임과 특권을 객관화 한 것이지만 그것이 구조화 되고 경직화 되었을 때 청소년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것이다.

나. 공식적 수준의 연령별 불평등

청소년의 연령별 불평등은 크게는 성인과 대립되는 의미의 청소년 집단 전체, 작게는 청소년 집단 내에서의 연령별, 학교급별, 취학과 미취학, 학생 청소년과 직업 청소년 등의 두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청소년은 아직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 사회적 한계와 제약을 부과 받는다. 이럴 때 가장 주된 이유는 보호라는 측면이 강하게 부각된다. 청소년육성법에서는 청소년이라는 대상을 가능한한 넓게 설정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이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소년법, 형법, 미성년자보호법 등 범죄 대책 관계법은 관계되는 범위를 넓히거나 좁힘으로써 보호의 차원에서는 넓히고, 형사소추의 차원에서는 가능한 좁혀서 불이익이 최소한으로 축소되게 하였다. 교육법, 학교보건법, 농어민 후계자육성법, 아동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의 조장적 법률들은 개인적, 사회적 복지·후생을 증진시키는 면에 있어서 청소년들에 특별한 관심과 보호·조장을 강조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 청소년에게는 노동과정, 취업환경의 위험요소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보호를 추구한다. 청소년의 사회적 활동은 법과 사회적 인식 수준에서의 보호와 조장, 예방이라는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진행된다. 상황부가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외가 인정되지만, 모든 청소년 자신의 활동과 사회적 평가는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러한 한계와 가능성 안에서 진행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불평등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가?

청소년은 문화적 공간이 필요하다. 법적으로 청소년은 보호와 사회적 육성이 보장되어 있지

만 그것은 법리적(法理的) 수준에서나 가능하고, 청소년들이 여가를 선택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져 있지 않다. 기껏해야 학교 운동장, 놀이터, 오락실, 텔레비전 뿐이다. 공간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학교 청소년에게 차별이 심하다.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인 문화공간과 단절된 학생 청소년들은 영화의 관람 제한, 디스코 텍, 당구장, 유흥 음식점 등의 출입금지를 강요당해 왔다. 물론 미성년자의 보호라는 정당화의 논리가 게재되어 있지만 학교 밖의 문화적 활동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정력과 호기심을 발전적이고 창조적으로 해소하여 성인사회로의 성공적 진입을 가능케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뿐 아니라 일탈비행 대상을 확장하는 결과만 초래한다.

다. 잠재적·비공식적 연령별 불평등

사회 속에서 사회 및 타인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생활해 가는 청소년들은 사회적 수준의 제약과 불평등 구조에 노출되어 있고, 이것은 청소년의 정체감 형성과 사회적 한계를 경험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그러나 청소년기라는 사회적 위치에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특권적 차별화라는 불평등에 직면하면, 건강한 발달과 미래의 성인사회의 필요한 요구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청소년의 연령별 불평등과 그로 인한 사회적 부적응·일탈 현상은 개인·심리적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필연적 산물일 수 있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각종의 사회적 불평등은 개인·심리적으로 왜곡된 삶을 형성하게 한다. 특히 청소년은 자기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나 주위 사람들의 사회적 평가에 민감하다.

궁극적으로는 개인에게 부과되고 감지되는 사회적 불평등은 청소년기의 독특한 존재의미 때문에 모든 청소년에 균등하고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불평등외에도 청소년 집단 내에서의 소집단 구분에서도 나타난다. 근로 청소년과 학생 청소년의 이중구조는 양자 모두에게 질적 차별성을 갖는 불평등이 놓여 있게 한다. 근로 청소년에게는 직업세계에서의 활동과 여가생활의 보장을 위해서 학생 청소년에게 부과되는 독특한 금지·제한 조항보다 어느 정도 완화되어 부과된다. 예를 들면, 술집의 출입, 영화관, 당구장, 디스코 텍 등의 출입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그러나 특히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교육을 받을 권리는 박탈되고 그로 인하여 사회적 패배감을 맛보아야 한다. 근로 청소년에 대한 금지·제한의 상대적 허용성은 이러한 패배감의 보상적 기능을 갖는 것이다. 학생 청소년들은 사회의 성취지향 문화에 강력한 영향을 받아 인지적 성취만이 강요되고 적극적인 학교외 문화활동은 제한 받는다. 금지구역 설정, 학생의 자율적 집단형성 제한, 사회문화 공간에서의 참여 제한 등 사회교육적 현실에의 참여를 조직적, 구조적으로 제지 당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다양하고 창조적인 발달과 개성의 발현이 억압되고 획일적이고 물개성적인, 따라서 비인간적인 성장을 강요 당한다. 성인사회 및 기존 사회체제에 참여를 제한하여 어느 정도 기성사회의 부정적인 영향에 의한 역 효과를 방지하고 순수성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강요되고 왜곡된 순수성이며, 상업문화의 침투와 인간관계의 물질화를 막지도 못하고 있다.

근로 청소년과 학생 청소년의 이중적 불평등 외에도 학교급별 차별화, 동일연령집단 내의

불평등 현상이 있다. 학교급별, 계열별 불평등은 법적 권리 및 사회참여의 제한 뿐 아니라 직업지위에서의 불평등을 낳는 직업 참여기회의 불평등을 낳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불평등은 학력을 중시하는 즉, 능력별 수준에 합당한 사회적 보상과 능력발휘를 위한 합당한 위치로의 배분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는 사회원리 하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의 학교급별, 계열별 차등화는 무분별한 교육열과 그로 인한 사회적 자본의 낭비, 입시위주 교육을 통한 인지적 교육과정 중시와 덕육, 체육의 경시로 인하여 전인교육이 불가능해지고 참다운 교육의 확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동일 연령집단에서의 불평등은—모든 사회구성원에게도 공통적인 내용이지만 기회의 균등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분석한다면—능력별(특히, 인지적 학습능력) 불평등, 지역별 불평등, 빈부간 불평등, 행동 성향별 불평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인지적 학습능력을 강조하는 능력별 불평등 현상은 현행의 교육제도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분야이다. 성적순에 의한 차별대우, 즉, 능력별 반편성, 학생회 간부 선정에서의 차별화 등에 의한 엘리트 의식과 탈락, 제외된 학생들의 좌절감, 모멸감 등을 차별적으로 경험케 한다. 이것은 경쟁에서 패배한 집단에게 스스로 가치 있고 사회에도 필요한 존재라는 자기 존재성을 부정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인지적 학습 능력의 강조에 의한 능력별 차별화는 학교급별, 계열별 차별화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왜곡된 교육열, 입시위주 교육, 전인적 발달의 저해, 왜곡된 경쟁원리에 의한 승자와 패자의 동시적 파괴화 등을 가져오게 한다.

지역별, 특히 도농간 불평등은 학교에 투입

되는 모든 자원의 불평등 현상으로서 학교의 질적 차이를 결과한다. 또한 문화공간 및 제공되는 문화시설의 차이는 도시에 비해 농촌,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의 문화적 낙후를 가져온다.

빈부간 불평등은 교육기회의 차등적 접근을 결과한다. 부교재의 구입, 과외활동의 제한, 일차적 사회화 기관—가정—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학습활동에서의 장애 등을 유발한다.

행동성향별 불평등은 사회조직의 존속과 발전을 지향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일탈·비행현상은 개인적 부적응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부적응을 허용치 않거나 구조적으로 조장하는 사회의 희생물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행·일탈현상은 일차적으로 개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전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성취규범에 잘 적응하고 온갖 사회적 제약·금지 조건에 보상이 충분히 주어지고 심리적으로도 우월감을 갖게 만든다. 그러나 성취규범의 일방적인 강요에 무조건적으로 순응·적응할 수 없는 청소년들은 소위 일탈자, 비행청소년 등으로 낙인 찍혀 사회적 불평등을 또 다시 감수해야 한다. 심리적으로도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패배감, 좌절감을 심어주며 더욱 부적응 현상을 나타낸다. 우리들은 개인적 부적응·비행·일탈이 사회적 차별화, 불평등을 자초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차별, 불평등이 부적응·비행·일탈을 조장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다음 절에서는 불평등이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고, 바람직한 청소년 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논의한다.

2.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의 연령별 불평등

청소년 교육은 학교교육 뿐 아니라 사회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은 교수-학습이라는 상호보충적 관계에서 이룩되는 교육현장에 의하여 현대사회에서의 기본적인 자질(가치관, 덕목, 지식, 기술, 행동방식 등)을 육성, 문화를 전승하고, 미래의 생활과정을 준비하고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극히 필요하며 아울러 풍부해야 한다. 또한 사회교육적인 청소년교육은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교육권의 보장과 사회적 경험의 풍부화,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의 준비·적응이라는 개인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국가·사회적인 당면한 문제이다. 그러나 청소년 교육의 두 측면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간에는 긴밀한 연계체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그 자체로서도 여러가지 불평등한 규제와 제한으로 가득차 있다.

학교교육은 학교 이외의 활동공간과 철저히 단절되어 경험의 풍부화를 제한하여 다양한 활동과 가치의 경험을 차단하고 있다. 법적, 사회적 보호와 규제 조항들은 일견 청소년의 정상적 발전과 보호를 보장하고 있는 듯하지만 최소한의 보호와 시설, 공간 뿐이고 적극적인 청소년 보호, 육성대책은 구비되어 있지 않다. 학생청소년에게 제공되는 문화, 활동공간의 협소함이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학교교육에 있어서 연령별 불평등은 주로 학교급별, 계열별 차별화에 의해 나타난다. 학교급별로 사회활동, 문화활동에의 참여기회가 차별화 된다. 계열별로 성취의 기본 목표가 분리됨으로써 차별적 사회화를 가능케 하며 사회적 권리, 자부심의 차이도 불평등을 강화한다.

사회교육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학교청소년의 사회참여 및 문화적 활동 기회의 불평등과 근로청소년 혹은 비취학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불평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생청소년은 연령별·학교급별·계열별로 같은 집단에게 동질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비취학·근로청소년들은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기회를 갖기 때문이다. 학생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만 열중하기를 강요받고 있기 때문에 여가선용의 기회가 줄어들고 실제로 제공되는 기회도 빈약하다. 비취학, 근로청소년들도 조직적인 사회교육 및 여가선용의 기회와 방법이 제한되어 있다.

3. 연령별 불평등과 청소년 교육

청소년교육은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해, 또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원리인 다양성과 다원적 사회체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연령별 불평등의 실체를 점검해 보았다. 따라서 청소년의 연령별 불평등의 해소와 적극적 청소년 교육정책의 가능성을 타진해 본 셈이다. 연령별 불평등의 문제를 청소년 교육에서 발전적으로 해소할 방법은 없는가?

먼저 청소년기의 존재성과 존재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감수성이 예민하고 사회·환경적 요인에 민감한 청소년대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청소년교육 및 육성책이 필요하다. 청소년에게 여가선용의 공간을 대폭 개방, 개설하고 실질적인 참여, 활동을 위하여 그것을 실제적으로 가로막는 요인도 제거함으로써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시·공간적인 뒷받침으로 청소년의 정력과 호기심을 발전적으로 해소하

고 원만한 인격형성과 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게 해야한다.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청소년 대책은 4가지 정도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사회교육 기관의 정비이다. 즉, 청소년기본법(안)상 설치되거나 장려되는 청소년교육 관계기관들의 발전적 통합으로 중구난방식의 청소년대책을 지양해야 한다. 물론 이는 다양성, 다원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재원의 효과적인 조달 및 활용을 위한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 및 기회의 확장이 필요하다. 기존 사회의 제재 때문에 일부 일탈적 청소년들만이 이용하는 문화공간을 상업성에 치우치지 않고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폭 확장, 개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청소년 전용 디스코 텍, 극장, 문화 발표회장, 체육시설 등을 대폭 확장, 개방해야 한다(최현, 1989). 셋째, 새로운 문화활동 즉, 청소년에게 독특한 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기존 성인문화에만 집착하지 않고 청소년 문화를 건전하게 발전, 창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용은 성인사회 및 지배적 가치만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적 대안을 청소년 스스로 찾고, 기존의 지배적, 전통적 가치와 약간의 갈등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서 가치를 두고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야 한다. 청소년은 다양화는 할 수 있어도 기존 사회체제를 해체·파괴시키지는 못한다. 사회안에서 발생되었으려니와 청소년 전체의 문화이기 때문이다. 넷째, 청소년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법령,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의 의식이 포용성을 갖춰야 한다. 청소년의 생활환경(학교, 직업세계, 여가활동 장소)에서 불평등을

야기하고 적극적인 청소년 문화를 창달하는데 장애가 되는 청소년 관계법 및 제도를 정비하고, 청소년이 자유롭게 활동하며 스스로 발전시켜 자아실현과 미래 직업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청소년 문화를 인정할 수 있는 의식수준에서의 변화와 포용성을 갖춰야 한다.

V. 요약 및 결론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성장하고 있는 현대사회는 공업화, 산업화, 도시화로 대변되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이다. 급변하는 사회변동과 유동적인 계층 이동은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사회의 안정화에 교란을 가져와 아노미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경쟁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승자와 패자가 동시에 형성되며, 경쟁에서 패하거나 탈락된 사람들에 의하여 사회불안·갈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회상황 하에서 미완의 대기인 청소년들에게 각종의 사회적 제약·규제가 가해지고 이를 따르기만 하라고 요구된다. 기존 사회체제의 우월성은 적극적인 청소년문화 육성 및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투입하지 않는 소극적인 정책만을 노정케 했다. 청소년 문제를 병리현상일뿐이라는 비행·일탈로 한정시켜 대응함으로써 청소년의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발달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연령별로 갖가지 법적·사회적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느정도 청소년의 사회화에 도움이되는 측면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일탈·부적응 청소년의 발생을 막지도 못했고 오히려 구조적으로 재생산해왔다. 청소년에 대한 각종 문화활동 및 공간에의 참

여제한, 정치적 환경—기존 정치영역이 아닌—에의 노출 방지, 발전적이고 건전한 사회참여의 제한 등은 연령별로 차등화되어 부과되고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시킴으로써 사회적, 개인·심리적으로 일탈·부적응을 강화했다.

청소년에 대한 연령별 차별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인 구별이다. 일정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집단을 구분하고, 그 집단에게 보호와 권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보호하기 보다는 과잉보호, 곧 규제였고, 권리를 부여하기 보다는 의무를 더 많이 부과했다.

청소년 교육을 올바로 정립하고 사회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실천을 가능케 하려면 먼저 의식·인식의 전환을 기하며 소극적이고 규제적인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청소년을 올바로 교육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부적응·일탈·비행만을 응징하고 막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제거하는 속에서 청소년 전체를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시도가 필요하다. 청소년 교육은 결국 이러한 모순점들—불평등의—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들은(40세 이상) 신세대들(15세—39세)에 대하여 신세대들이 자신이 평가하는 것보다 더욱 그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한국사회의 세대구분과 세대차이 중에서). 이는 기성세대들이 그전 세대들보다 인습적 전통에서 많이 벗어나 있으며 후세대를 미래의 주역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분명히 기성세대(성인의 의미로서)들은 청소년들을 미래의 주역으로 여기며, 그들의

교육에 어떠한 것이든 선(善)과 진(眞)으로서 임하려고 할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선과 진으로서 여기는 것이 반드시 그러하다는 보장은 없으며 앞서 열거한 불평등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우선 그들 자신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개혁은 곧 시대가 요구하는 청소년의 교육지표에 근접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첫째, 청소년을 방황과 반항에서 끌어내어 선도해야 할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능력을 지닌 독립된 인격체로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의 자율과 개성을 지극히 존중해 나가는 방향으로 규제와 지도가 이끌어져야 할 것이다. 어른 눈에 꼭 드는 방식은 결코 청소년에게도 꼭 맞는 방식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가정에서의 청소년 자식에 대한 그들 문제의 의사결정도 보다 민주적이어야 한다. 청소년은 본고의 처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의 사랑과 신임을 더욱 얻고 싶어하며 그들의 의견이 가정내에서 존중될 때 자아정체감 형성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넷째, 교육과정과 내용 다원화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교사의 수업권(授業權)이 보다 독립적이며 학교자체의 억압적 권위가 사라지며, 문교행정 또한 진실한 교사와 학생의 지지자로서 방향전환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은 필수적으로 개성있고 다양하며 학생들—청소년들—의 창의력을 북돋울 수 있는 교육과정과 내용의 개편을 부수할 것이다.

임시지옥, 자살, 사회적 가치의 혼돈과 그 속에서의 좌절등으로 연상되어지는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은 교육철학적 가치정립, 민

죽전통을 잇는 교육사적 이념확립과 마찬가지로 교육 사회학적 불평등이라는 요소를 없앴으

로 정립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곽윤직 (1988), 민법개설, 박영사.

최 현 (1989), 청소년정책의 파급효과분석, 계문사.

한준상 (1989), 청소년문제와 학교교육, 연세대학교 출판부.

Bandura, A. and Walters R.H.(1963), *Social Learning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Holt, Reinehart and Winston.

Davis, I.P.(1985) *Adolescents: Theoretical and*

Helping Perspectives, Boston: Kluwer-Nijoff Publishing.

Schell, R.E. and Hall E.(1979), *Developmental Psychology Today*, New York: CRN/Random House.

Sebald, H.(1984), *Adolescence: A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ABSTRACT〉

The Unequal Social Treatment of Young Koreans on the Basis of Chronological Age and Its Characteristics

*Hyun Choe**

Life is a continuous process and natural growth processes do not occur in distinct stages. Humans, however, show considerable structural order to facilitate social predictability and communication. It is, therefore, an arbitrary and heuristic practice to subdivide the period of life into childhood, youth and adulthood. There are no signals and significant indicators of the termination of youth and the entrance of adulthood. Only economic independence, stable employment, and marriage are adult indicators. In a strict legal sense, adulthood in Korea is reached at the age of twenty. At that age, full

civil rights such as voting, drinking, marriage, making contracts, criminal justice etc., usually become available to young Koreans.

The limitation of the above-mentioned civil rights and other unequal social treatment of young Koreans on the basis of chronological age should be terminated by the late teens who's psychological and social development are expected to coincide and produce a normal functioning. Korean youths, otherwise, may be segregated from adults and Korean society in the meaning of their social roles.

*Research Director, Korea Institute for Youth and Children.